

의안번호	제 234 호
의 결 연 월 일	2023년 3월 일 (제407회)

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유상용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3월 7일

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

(유상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3월 7일

발의자 : 유상용 · 김현문 · 이정범
박병천 · 박용규 · 박재주
이윅희 의원

1. 제안 이유

충청북도 학생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교의 보건관리 및 보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-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보건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)
- 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보건교육센터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비용추계: 붙임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

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보건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라 충청북도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생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.
2. “보건교육”이란 「학교보건법」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질병의 치료와 예방, 음주·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·남용의 예방, 성교육, 정신건강,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·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3.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

4.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및 활용 방안

5.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

6.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)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.

②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충청북도 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.

제6조(보건교사의 배치 등) 교육감은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보건교육을 위해 모든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7조(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)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제4조제1항의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2.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·소통 등에 관한 사항

3.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「학교보건법」 제17조에 따라 구성·운영되고 있는 ‘충청북도학교보건위원회’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.

제8조(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 개발, 연수운영, 자료개발, 사업평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.

③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전문직과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되,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.

제9조(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·운영)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학교보건법

[시행 2022. 6. 29.] [법률 제18640호, 2021. 12. 28., 일부개정]

제2조의2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
직원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
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14.]

제9조(학생의 보건관리)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, 질병의
치료와 예방, 음주·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(誤用)·남용(濫用)의
예방, 성교육,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, 도박 중독의
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
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3. 21., 2012. 1. 26., 2019. 12. 10., 2021. 12. 28.>

[전문개정 2007. 12. 14.]

제9조의2(보건교육 등) ①교육부장관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
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
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
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, 도서 등 그 운
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
23., 2013. 12. 30., 2016. 12. 20.>

②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「초·중등교육
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
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
다. <신설 2013. 12. 30., 2016. 12. 20.>

③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·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12. 20.>

[본조신설 2007. 12. 14.]

[제목개정 2013. 12. 30.]

제17조(학교보건위원회) ①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학교보건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·도학교보건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2. 1. 26.>

② 시·도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의 보건에 경험이 있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2. 1. 26.>

③ 시·도학교보건위원회의 기능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 1. 26.>

[전문개정 2007. 12. 14.]

제15조(학교에 두는 의료인·약사 및 보건교사)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「약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2. 1. 26.>

② 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)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6. 8.>

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. <신설 2021. 6. 8.>

[전문개정 2007. 12. 14.]

[제목개정 2012. 1. 26.]

□ 학교보건법 시행령

[시행 2022. 3. 8.] [대통령령 제32528호, 2022. 3. 8., 타법개정]

제23조(학교에 두는 의료인·약사 및 보건교사) ① 삭제 <2021. 12. 9.>

② 법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·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. <개정 2021. 12. 9.>

③ 법제15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”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. <신설 2021. 12. 9.>

④ 법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(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, 이하 “학교의사”라 한다) 및 학교에 두는 약사(이하 “학교약사”라 한다)와 같은 조 제2항·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12. 9.>

1. 학교의사의 직무

가.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

나.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·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

다.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

라.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

마.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

바.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

2. 학교약사의 직무

가.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

나.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

다.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

라.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·검사

마. 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

3. 보건교사의 직무

가. 학교보건계획의 수립

나.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·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다.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

라.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

- 마.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,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
 - 바.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
 - 사.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
 - 아.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
 - 자. 보건실의 시설·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
 - 차. 보건교육자료의 수집·관리
 - 카.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
 - 타. 다음의 의료행위(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)
 - 1)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
 - 2)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
 - 3)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
 - 4)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
 - 5) 1)부터 4)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
 - 파.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
- [제목개정 2021. 12. 9.]

제24조(보건위원회의 기능) ① 삭제 <2012. 8. 13.>

② 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학교보건위원회(이하 “보건위원회”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2. 8. 13.>

1.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·도의 중·장기 기본계획
2. 학교보건과 관련되는 시·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의 제정·개정안
3.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학교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
4. 삭제 <2017. 2. 3.>

[제목개정 2012. 8. 13.]

□ 초·중등교육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6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 <개정 2019. 12. 3.>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「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」 제8조(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, 제9조(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·운영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안은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건교육센터 설치,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 등은 향후 운영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